

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 모집공고

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전자부품 집적지 일대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「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0일
용인시산업진흥원장

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**소상공인24**(<https://www.sbiz24.kr>)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.
 - 소상공인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(신청 바로가기: <https://www.sbiz24.kr/#/pbanc/622>)
- 사업신청 시 법인의 경우, **법인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**바랍니다.
 - 신청인 정보와 대표자 정보가 다를 경우 원활한 사업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한 **‘마이데이터’ 정보 제공 동의**를 권장합니다.
 -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1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:** 집적지 내 제조 소공인의 사업화·마케팅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
- **지원규모:** 총 4개 지원사업, 49개사 내외
- **지원자격:**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**제조업 소공인**
 - 용인 기흥구 **영덕동, 하갈동, 구갈동, 서천동, 농서동, 동백동, 중동, 언남동,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**이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
 - 주업종이 **C26, C28, C29**에 해당하는 소공인

한국 표준산업분류 중분류	
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정보 통신장비 제조업
C28	전기장비 제조업
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※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라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, 상실연도의 다음해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함. 단, **소상공인확인서**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
□ 신청 제외대상

구분	세부내용
참여제한	○ 정부·지자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○ 고용노동부 임금 등 '체불사업주 명단공개'에 등재된 사업자
중복지원	○ 당해연도 '용인시산업진흥원 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' 내 사업 5개 이상 선정 기업 ※ 2026년 지원사업 공통 안내문(별첨) 참고 ○ 진흥원이나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※ 동일성 여부는 진흥원 판단을 기준으로 하며 유관기관 중복 지원 여부 확인
세금체납	○ 국세, 지방세, 세외 수입 체납 중인 기업
채무불이행	○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인 경우
부도/휴·폐업	○ 기업이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경우
허위서류	○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기타	○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○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참여 제한 기업 ○ 기타 관련 법령, 신청자격, 진흥원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※ 지원자격 및 신청제한 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되, 최종 선정 시점 또는 협약체결 이후에도 부적격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
2 지원내용

□ 세부 지원내용 (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, 부가세는 지원 불가)

- 전략지원 분야: 기업당 최대 1,000만원 지원
- 일반지원 분야: 기업당 세부사업 총합 최대 700만원 지원 ※ 중복 지원 가능

분야	세부사업	지원금액	지원규모	세부내용	지원한도
전략 지원	반부장 스케일업 패키지	최대 1천만원	4개사 내외	○반도체/소부장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대상 - 표준산업분류(소분류) 261, 262, 281, 282, 283, 289, 291, 292 해당 기업만 신청 가능 ○시제품, 인증 및 산업재산권, 마케팅 분야 통합 지원 - 위 3가지 분야 중 2가지 이상 선택 필수	기업당 최대 1천만원
일반 지원	소공인 시제품 제작	최대 700만원	25개사 내외	○PCB, 목업, 금형 등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(제품개발SW, 부품구입 등 제작 관련 필수 비용 포함) ※ 유형의 시제품 결과물이 도출되는 과업만 지원, 단순 기획·설계 등 무형의 산출물은 지원 불가	기업당 세부사업 총합 700만원 한도
	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(IP)	최대 300만원	10개사 내외	○국내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 출원·등록 비용 지원 (해외 지원 불가) ○국내외 인증 신규 취득 및 공인시험성적비용 지원 - KOLAS 인정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 시험기관 인정(knab.go.kr 검색), 단순 민간 컨설팅 비용 불인정 ※ 2026년 2월 1일~협약기간 내 완료 건 소급 지원 가능	
	소공인 마케팅 지원	최대 300만원	10개사 내외	○키워드, SNS 온라인 마케팅 홍보 지원 ○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(카탈로그, 브로셔, 리플렛, 홍보 영상 등) ○홈페이지 제작 비용 지원(신규 구축, 고도화)	

※ 전략지원, 일반지원 분야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, 선정평가를 통해 2가지 분야 중 1가지 분야만 선정함.

※ 일반지원 분야는 세부사업 간 중복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세부사업 총합 최대 700만원 한도.

※ 사업 수행은 자체 수행이 아닌 국내 대행업체(외주)를 통해 수행(제작)해야만 함.

3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: **공고일 ~ 2026. 5. 4.(월) 17:00까지**

-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전 신청 권장
- 신청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, 그 사유와 관계없이 신청/접수 불가(평가 제외)

□ 신청방법: **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**

- 신청 링크(<https://www.sbiz24.kr/#/pbanc/622>) 접속 후 세부사업별 해당 공고 신청
 - 세부사업별로 해당 공고를 각각 확인한 후 별도로 신청·접수해야 함
 - 사업신청을 위해 사전에 소상공인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
- ※ 소상공인24 공고 검색방법: 소상공인24 [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] → [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] → 검색창에 '용인' 검색 → [용인 영덕 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모집 공고] 클릭 → 페이지 최하단까지 스크롤 → 해당 지원사업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접수

□ 문의처

구분	문의처	연락처
사업 관련 문의	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	031-8067-5013, 5041
소상공인24 홈페이지 및 시스템 문의	소상공인24 콜센터	1644-5302

4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

□ 선정방법

- 외부 평가위원 5인에 의한 선정평가
 -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
 - 서면평가를 원칙으로하되,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음
-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영세기업(직전년도 매출액, 근무인원 적은 순) 우선 선정
-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목표, 지원금액, 지원범위 등이 조정·변경될 수 있음
- 선정평가 후 기업 실사,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, 타기관 중복수혜 여부 조회 등을 진행한 후 이상 없을 시 최종 선정기업 통보
- 최초 미선정 기업 중 70점 이상은 예비번호를 부여하며, 사업포기·탈락·실패 등 잔여 예산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·지원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○ 선정평가 평가표

평가항목	세부 평가항목	배점
지원의 필요성	- 추진 목적 및 배경, 추진 필요성 등	20점
기업(제품) 역량	-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- 사업수행능력,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	20점
사업계획의 적정성	-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, 구현 가능성 - 집행계획 적정성,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	40점
기대효과	-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 등	20점
총점		100점

○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

- 가점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필수, 증빙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

구분		점수	비고	
가점	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	+1점	진흥원 입주계약서 제출 필수 (* 비상주 기업은 가점 제외)	
	여성기업	+1점	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확인서 제출 필수	
	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	+1점	용인시 인증서 제출 필수 * 중복 적용 불가	
	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	+2점	-	
감점	지원금액 총계 (전년도)	5천만원 이상	-4점	-
		3천만원 이상	-3점	-
		3천만원 미만~2천만원	-2점	-
		2천만원 미만~1천만원	-1점	-
	매출액 (전년도)	300억원 이상	-4점	-
		300억원 미만~200억원	-3점	-
		200억원 미만~100억원	-2점	-
		100억원 미만~50억원	-1점	-

* 가·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

*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해당 기간이 공고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가점 인정(입주계약서, 여성기업확인서,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)

5 추진절차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1. 신청접수 • 지원사업 신청접수 (소상공인24) 신청기간(4월)	▶	2. 기업선정 • 선정평가(서류평가) • 선정기업 실사 5월 중	▶	3. 선정통보 • 최종 선정기업 통보 5월 말	▶	4. 협약체결 • 협약체결 (전자/대면 체결) 5월 말~6월 초
5. 사업수행 • 사업(과업) 수행 (약 3~4개월) 협약체결일~협약종료일	▶	6. 중간점검 • 중간점검 (서면/현장 점검) 7월	▶	7. 완료평가* • 완료보고서 접수 • 완료평가 진행 9월~10월	▶	8. 지원금 지급 • 완료기업 대상 지원금 후지급 10~11월

※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(IP) 지원사업은 인증서 등의 사업 결과물과 완료보고서 제출로 완료평가를 대체함

※ 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6 지원금 지급

□ 지원금 지급

○ 지원금 지급방법: 후지급(100%)

- 본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며, 증빙서류 미비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내 사업비를 대행업체에 지급 (기업→대행업체)
 - ※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집행 및 증빙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
 - (단,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(IP)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2월 ~ 협약기간 내 집행완료 건 지원 가능)
- 사업 수행 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지출 증빙 등 필요서류 제출
- 사업 완료평가 실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후지급

○ 지급조건

- 사업수행 완료 후 완료평가 결과가 '적정'일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
- 완료평가 결과가 '실패'이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불가
- 지원금은 사업완료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최종 확정 금액에 따라 지급
-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음
 - ※ 기존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의 항목 및 금액은 불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은 지원금 지급 불가
- 부가가치세, 송금(이체)수수료, 직접 인건비, 여비 등의 항목은 지원 불가

○ 지급처: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신청접수 기간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선정평가에서 제외됨
 - 사전에 제작한 과업이나 결과물로 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, 최종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사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지원(신청)자격 미충족으로 확인될 경우,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사업 수행 중 대행업체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
 - 추진일정 등 공고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이메일/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함. 이에 따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.
 - 진흥원의 요청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(매출액, 고용현황 등 실적 조사, 만족도조사 등)
 - 사업중단·실패 등에 따른 제재사항, 기타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내규에 따름
 -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 - 본 공고문이 진흥원 규정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, 관련 규정 및 지침, 사업운영 매뉴얼을 따름
 - 기타 지원금 지급 불가항목
 - 증빙 서류가 불충분 함에도 제출기간 내 보완·소명되지 않은 지출금액
 - 기업 대표자 또는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금액
 - 기업 명의 계좌로 처리 되지 않은 금액 (현금 및 카드 거래 불가)
 - 간이 세금계산서, 수기 작성 증빙 등 인정 불가
 - 후원금, 연체료, 위약금, 부가세 및 관세, 기타 수수료성 비용
 - 인건비, 임차료, 자산취득비, 식비, 회의비 등 해당 사업과 연관이 없는 금액
 - 특수관계자(직계비존속, 친척, 배우자, 이해관계자 등)와의 거래 금액
 - 신청대행사를 통한 사업 신청이 판명된 경우
 - 그 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센터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금액
- ※ 지급 인정여부가 불명확한 경우,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.

8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	비고
필수 서류	1	○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기업 직인 날인 필수) - 대행업체 견적서 및 타업체 비교견적서 포함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(업태/종목이 해당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함)	진흥원 양식
	2	○ 사업자등록증 (아래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함께 제출) - 본사가 관외이고 공장만 관내(집적지)인 경우 공장등록증(1개월 이내) 제출 필수	홈택스, 정부24 등
	3	○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- 주업종(코드) 기준으로 작성 (주업종 홈택스 조회화면 포함)	진흥원 양식
	4	○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-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제출(대표자, 담당자 등)	진흥원 양식
	5	○ 신청기업 협약서 (기업 직인 날인 필수)	진흥원 양식
	6	○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(손익계산서 필수) -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+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	국세청 홈택스, 세무서 등
	7	해당 시 ○ 법인 사업자는 '대표자(개인) 명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' 제출 필수 * 개인 사업자는 '마이데이터' 등의 시 자동 제출	
해당 시	8	가점 서류 ○ 여성기업 : 중소기업부 여성기업확인서 ○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 : 진흥원 입주계약서 ※ 비상주 입주기업은 가점 불가 ○ 용인시 우수기업/일자리창출 우수기업 : 용인시 인증서 ※ 택 1, 중복 적용 불가	
필수 서류	9	○ (신청기업) 사업자등록증명원 * 업태 제조업 필수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
	10	○ (신청기업) 국세납세증명서 *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
	11	○ (신청기업) 지방세납세증명서 *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
	12	○ (신청기업)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* '소상공인' 명시 필수,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	
	13	해당 서류 제출 필수 ○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) ○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: 아래사항 중 택 1 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-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 -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-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	

-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**PDF파일**로 변환하여 제출
- 제출서류는 **유효기간 이내**여야 하며,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**신청일 기준 30일 이내** 발급분 제출
-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,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(신청)자격 상실 및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붙임 1. 세부사업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.
2. [필수] 공통 제출서류 양식 1부.
3. [참고] 2026년 지원사업 공통 안내문(진흥원) 1부.